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4.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15일 제출
- 회 부 : 1998년 4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, 공무원여비규정 (대통령령 제15680호, '98.2.24) 이 제정됨에 따라,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여비의 종류에 준비금 등을 첨가하고,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표기 (안 제2조)
- “국내여비규정” 및 “국외여비규정”을 준용하였던 것을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준용 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